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52929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기은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예금[별지 목록 '비고'란 기재 '카카오뱅크'는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동화동새마을금고'는 C 명의의 동화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광주동부신협'은 C 명의의 광주동부신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의미한다] 및 급여[C의 고용주인 D이 2021. 11. 30. 별지 목록 제44, 45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한 C의 급여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2020. 5. 17.부터 2021. 11.

30.까지 발생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 및 C의 고용주 D으로부터 이체 받은 위 예금 및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그 가액인 총 27,051,600원을 배상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57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3. ‘C은 원고에게 1,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한편, C은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10980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2. 4.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초하여 위 개인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 개인회생절차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23.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이미 채무자 C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109802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